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
------	----

제출년월일 : 2006. 11. 4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읍·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의 사용료가 현실에 비해 낮은 반면, 연료비 등 관리비용이 너무 높아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목욕탕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고, 새로 준공한 대화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의 사용료를 책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읍·면 종합복지회관 시설에 대화면 종합복지회관을 추가함
(안 별표1)

나. 종전에는 어른·학생·어린이 등 3단계로 구분되던 목욕탕 사용료를 어른·어린이 2단계로 조정하여 인상하고, 새로 준공한 대화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사용요금을 책정함 (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06. 9. 19 ~ 10. 9)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소비자정책심의회(2006.11.9)결과, 승인

평창군조례 제 호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5번란 다음에 6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화면 종합복지회관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984번지
---	------------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종합복지회관시설 사용료 기준(제18조 관련)

시 설 명	기준	사 용 료 (원)		비 고
		어 른	어 린이	
1. 미탄면·방림면· 봉평면 종합복지 회관 목욕탕	1회	2,500	1,500	어린이는 초등 학생(13세) 이하
2. 대화면 종합복지 회관 목욕탕	1회	4,000	3,000	
3. 회의실 1) 예식장 2) 다목적 집회장, 기타	1회 1회	20,000 15,000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재정법[전부개정 2005.8.4 법률 7663호]

제31조(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생략)

□ 지방자치법[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57호]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11>

② ~ ③(생략)